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장기성장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모투자신탁 추가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 (생 략) 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 <신 설> ④ (생 략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트러스트 장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</u> ④ (현행과 같음)
모투자신탁 추가	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15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가. ~ 다. (생 략) <신 설> 2. (생 략)	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15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<u>라. 트러스트 장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하로 한다.</u> 2. 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개정 에 따른 변경	제46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	제46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

	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~ 10. (생략) ② ~ ⑩ (생략)	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 3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⑩ (현행과 같음)
	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</u>